

학생준칙

제정 1993. 3. 10. 개정 1994. 1. 13.
개정 1998. 7. 24. 개정 2001. 3. 10.
개정 2001. 9. 1. 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생준칙은 대경대학교 (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의 교육목적과 학칙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통하여 항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주지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본 대학의 학생은 학생준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준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학생기록카드

제3조(기록카드제출) 본 대학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학생기록카드를 정확히 기재하여 각 학부/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사항의 변경) 학생기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학생증

제5조(학생증 발급) 본 대학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기간 내에 교학처(학생팀)에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제6조(학생증 소지) ①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소지해야 하며 본 대학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시해야 한다.

② 학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 시험, 도서열람 및 기타 교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제7조(대여금지) 학생증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8조(재발급)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시는 학생증 발급은행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제 4 장 학생활동

제9조(집회 또는 행사승인) ① 학생이 교내·외에서 집회(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행사승인신청서를 교

학처(학생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② 학생단체의 교내·외 집회 및 행사에는 사전 승인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게시물) ① 교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 게시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안을 교학처(학생팀)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고, 게시장소나 게시시간을 지정 받은 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② 게시기간이 끝난 게시물은 게시 자가 제거하여야 한다.

제11조(인쇄물)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는 원고 1부를 인쇄물 배포승인서에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각종 행사 참여

제12조(대외행사 참여) 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로 대외행사에 학교 명의로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학생팀)를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 임회하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제13조(상벌)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상벌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14조(세부사항) 본 학생준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심의하여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준칙은 199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준칙은 199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준칙은 199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준칙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준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준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준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